옥천군의회 공고 제2021 - 80호

#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30일

옥 천 군 의 회 의 장

1. **자치법규명** :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 발의자 : 유재목 의원)

2. **발의의원 : 유재목 의원 외 7인**

3. **제안이유**

○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옥천군의회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조례를 마련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수정하고, 옥천군의회와의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근거를 정하고자 함.

## 4. 주요골자

○ 소속 공무원에서 ‘의회사무과(군의원 포함)’ 삭제 (안 제2조)

○ 옥천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(안 제12조)

## 5. 의견제출

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5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(☎043-730-3932, FAX 733-9225)

## ※ 의견통지내용

가. 조례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 · 단체일 경우 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

붙임 1.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의견서 1부.

옥천군조례 제 호

#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읍·면 및 옥천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(군의원 포함)”을 “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읍·면에 소속된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통합 운영) 군수는 옥천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“소속 공무원”이란 옥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 본청・직속기관・사업소・읍・면 및 옥천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(군의원 포함)을 말한다.<br>2.・3. (생 략)<br><신 설> | 제2조(정의) ----------.<br>1. ---------- 본청・직속기관・사업소・읍・면에 소속된 공무원----------.<br>2.・3. (현행과 같음)<br>제12조(통합 운영) 군수는 옥천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. |
| 제12조 (생 략) | 제13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 |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조 례 명 : 옥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| 조 례 안 | 의 견 |
|---|---|
| | |